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2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10. 16.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9. 12. 3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학습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특별휴가(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14조의2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신설)으로 기존 조항과 중복
 - 여성보건휴가: 매월1일(무급,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내 10일(유급, 임신검진의 사유)

2.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9항)

- 각급 학교 근무자와 각급 학교 외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동일하여 공무원에게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부여

3. 특별휴가(포상휴가) 신설 (안 제14조의2제10항)

-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직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4.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신설 및 확대 (안 제14조의2제1항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10일(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1일(신설)
-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휴가: 1일(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휴가: 2일 → 3일(확대)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조례안 [별첨 7]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조례안 [별첨 2])

3. 협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 [별첨 1]

나. 입법예고(2020. 9. 14. ~ 9. 24.)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조례안 [별첨 3]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2020. 8.

20. ~ 9. 9.) 시 제출된 의견 반영, 재입법예고 실시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 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 5])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 조례안 [별첨 6]

사. 관계법규 : 조례안 [별첨 7]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29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습휴가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9조1)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²⁾ 적용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적용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복무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조정(안 제14조의2제1항)

○ 동 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2제1항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였는바, 결혼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에 대해 1일의 휴가일수를 새롭게 부여하였으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일수를 신설(1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사망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표1] 전국 시·도 교육청의 경조사별 휴가일수(2020. 12. 9 기준)

구분	대상	교육청별 조례 규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현행	개정안																
결혼	본인 (*복무규정 5일)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자녀 (*복무규정 1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1		1							1	1
출산	배우자 (*복무규정 10일)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복무규정 20일)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증) :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포함	2	3	3	3	3	3	3	2	3	3	3	3	3	3	3	3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복무규정 1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1				1		1						1	1

○ 우선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2019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의 [별표1]이 개정되어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가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①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결혼 휴가일수 1일”과 “②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일수 1일” 그리고 “③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 대한 사망 휴가일수 3일”과 관련해서는,

앞의 [표1] 전국 시·도 교육청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부여 현황과 교육청의 개정배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동 개정조례안에서 부여하는 휴가일수가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①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결혼 휴가일수 1일”과 “②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일수 1일”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특별휴가가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휴가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³⁾

3) 「서울특별시 공무원 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따라서 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 특별휴가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여성보건휴가 등의 삭제(안 제14조의2제3항)

○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로서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였으며, 당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여성보건휴가 등에 대해 별도의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제7조의7제10항과 제11항에(현행 제11항 및 제12항)⁴⁾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⁵⁾ 따라 대통령령의 적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인해 현행 조례상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2019년이었던 점에 현행 조례의 개정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바,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습휴가의 형평성 제고(안 제14조의2제9항)

○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의2제9항의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 제8조에⁶⁾ 따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31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청 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4일 이내로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교육감 소속 모든 지방 공무원에게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공통적으로 부여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서는 2일의 ‘사가독서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서울시와 교육청의 기관 형평성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휴가 일수(2020. 12. 9 기준)

연번	시도명	학습휴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서울	4일	2일
2	부산	4일	4일
3	대구	3일	-
4	인천	3일	3일
5	광주	4일	-
6	대전	4일	4일
7	울산	4일	-
8	세종	2일	-
9	경기	4일	-
10	강원	5일	5일
11	전북	5일	5일
12	전남	3일	3일
13	충북	5일	5일
14	충남	5일	5일
15	경북	3일	-
16	경남	4일	2일
17	제주	-	-

※ 학습휴가를 규정한 교육청 중 서울과 경남만 근무기관별 차이를 두고 있음.

6)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포상휴가 신설(안 제14조의2제10항 신설)

-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의2제10항은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복무책임자인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와 같은 포상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⁷⁾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이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서⁹⁾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로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진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포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¹⁰⁾ 모두 포상휴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시·도

7)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등에서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1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청별로 포상휴가의 유무에도 차이가 있고 포상휴가 일수에도 차이가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이 명시한 '5일 이내'의 기간이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휴가 일수(2020. 12. 9 기준)

연번	시도명	포상휴가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5일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3일
9	경기	-
10	강원	5일
11	전북	-
12	전남	-
13	충북	5일
14	충남	-
15	경북	5일
16	경남	-
17	제주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

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